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54

발의연월일: 2023. 2. 1.

발 의 자:노용호·최승재·구자근

박대수 · 김상훈 · 김용판

金炳旭・최재형・엄태영

박수영 · 정우택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'중소기업 일자리평가'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 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 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 거가 없어 해당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

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,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 2항, 제25조 및 제32조의2 각각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소기업"을 "중소기업(이하 "지방중소기업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5조(중소기업 일자리평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(이하 "중소기업 일자리평가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 -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, 항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의 우대)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중소기업을 우대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	제8조(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
필요인력의 양성 등) ① (생	필요인력의 양성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	2
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	
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	
위하여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	
업장 중 어느 하나가 「수도권	
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	
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	
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	중소기업(이하 "지방중소기업"
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	<u>이라 한다)</u>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5조(중소기업 일자리평가) ①
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
	업의 고용 증감 및 고용의 질
	등에 대하여 평가(이하 "중소
	기업 일자리평가"라 한다)를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

<신 설>

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 상, 항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2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의 우대)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중소기업을 우대한 다.